

#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송재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37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송재혁, 강동길, 김성준,  
김인제,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송경택, 아이수루,  
,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이민옥, 이병도, 이상훈,  
이소라,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최재란,  
한·신 의원(25명)

##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국가와 지자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예산제(감축, 배출, 혼합, 중립) 운영을 통해 예산 및 사업의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며, 결산 단계에서 예산의 집행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함으로 서울특별시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예산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법령에 근거한 기후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함(안제1조)
-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지표, 대상사업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과정에서 기후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제3조)

- 다.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예·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함(안제4조)
- 라.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제5조)
- 마. 기후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을 위해 기후예산제의 운영 성과 평가, 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함(안제6조)
-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7조 및 제8조)
- 사. 시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제10조)
- 아. 기후예산제 시행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제11조)
- 자.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기후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또는 지원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함(안제12조)
- 차. 기후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사업의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안제13조)
- 카. 기후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예·결산서의 평가·분석 등의 사무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제14조)
- 타.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함(부칙)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국가회계법,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기후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후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지표 및 감축효과, 감축방안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기후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기후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서 작성) ① 시장은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기후예산

서·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후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기후예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기후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예산의 개요
2. 기후예산의 규모
3. 기후예산의 성과지표 및 효과분석
4.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후예산제 운영에 따른 분석·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후예산제 적용 범위 및 대상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후예산 사업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기후예산제 운영 성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후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의 기후예산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기후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예산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후 예산제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교육과정의 운영)** 시장은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 및 지원)** 시장은 기후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민 참여 및 지원)** ① 시장은 기후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기후예산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기후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시장은 기후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기후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기후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3101500000012

## 미참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송재혁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3.10.15.

회신일 : 2023.10.16.

내용문의 : 02-2180-7953

###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참부 근거 규정
3. 미참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참고] 2023년도 기후예산제 운영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사업명	예산액(천원)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점검	72,000
(탄소중립 이행평가 및 기후예산제 지원)	(18,000)

자료: 2023 서울시 예산서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1) 추계결과 = 32,500천원(연평균 6,5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6,5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4~2028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안 제7조의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1명)은 공무원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32,500천원(연평균 6,5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안 제7조)		6,500	6,500	6,500	6,500	6,500	32,500
	소계(b)		6,500	6,500	6,500	6,500	6,500	32,500
□ 총 비용(b-a)			6,500	6,500	6,500	6,500	6,500	32,500

○ 후생복지심의위원회 = 32,500천원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28,000천원+4,500천원

- 참석수당 = 28,000천원

= 수당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200천원×14명×2회×5년

※ 참석수당 단가 : 「2023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지급인원 : 위원 15명 중 위원장(1명)은 제외

- 업무추진경비 = 4,500천원

= 경비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30천원×15명×2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